

의안번호	2215661
의 퇴 인	전종덕 의원
회 답 일	2026. 5. 6.
추 계 번호	25B7351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3억 5,000만원(연평균 4억 7,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100	-	-	-	-	100	20
실태조사 (안 제6조)	450	450	450	450	450	2,250	450
합계	550	450	450	450	450	2,350	47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식용유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조(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과 식용유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의무규정
4	안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발전과 국내산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식용유지작물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식용유지작물 재배기술, 시설·장비, 수확 후 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 3. 식용유지를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4.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식용유지 관련 식생활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식용유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음(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보급·산업화하기 위하여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8조(교육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식용유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1. 식용유지작물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식용유지의 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5.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6.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또는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0조(계약재배의 장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식용유지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식용유지산업 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11조(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9	안 제12조(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3조(단체의 설립)	식용유지산업종사자 등은 식용유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11	안 제14조(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내산 식용유지 또는 식용유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2	안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미대상: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식용유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3	안 제6조(실태조사)	○	•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4	안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용유지산업의 발전과 국내산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식용유지작물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식용유지를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등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결과를 보급·산업화하기 위하여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식용유지산업 발전 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계획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등의 지원 대상·기준·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8조(교육훈련)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용유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교육훈련 대상·내용,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기준·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안 제9조(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식용유지작물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식용유지의 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반 조성 등 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7	안 제10조(계약재배의 장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계약재배의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계약재배에 따른 지원 기준·내용·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으로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8	안 제11조(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된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은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정될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의 수, 지원 기준·내용·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9	안 제12조(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0	안 제13조(단체의 설립)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식용유지산업종사자 등이 식용유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내용 등을 예측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14조(우선구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내산 식용유지 또는 식용유지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우선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12	안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 업무 위탁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
 - 추계기간 중 첫해에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기본계획 수립 사례

(단위: 백만원)

유사 기본계획	수립비용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 연구	100
적정농지 확보계획 수립방안 연구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	-	-	-	100	2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실태조사(안 제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용유지산업 육성과 식용유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2억 5,000만원(연평균 4억 5,000만원)으로 추계

－ 실태조사는 제정안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실태조사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연도	금액
말산업 실태조사	2025	4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표 5]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450	450	450	450	450	2,250	45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
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
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